

### (보전기준가격)

1. 기금은 매사업년도 당해사업년도 개시전에 평의원회의 의견을 듣고, 또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란에 대한 보전기준가격을 정한다.
2. 기준가격은 계란의 생산조건 및 수급사정 기타의 경제사정과 아울러 이 기금과 동종(同種)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단법인의 보전기준가격을 감안하여 정한다.
3. 기금은 계란의 생산조건, 수급사정 기타의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했을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평의원회의 의견을 듣고 또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준가격을 개정할 수 있다.

4. 기금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또는 이것을 개정했을 때도 자체없이 이를 공고함과 동시 회원에게 통지한다.

### (표준거래가격)

표준거래가격은 이 기금과 동종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단법인이 별도로 지정한 계란판매소에서 판매된 적격란의 가격의 판매수량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기금은 거래가격이 기준가격을 밑돌 때에는 계약회원에 대하여 가격차 보전금을 교부한다.

### (가격차보전금의 교부액)

1. 앞의 규정에 의한 계약회원에 대하여 교부하는 가격차보전금은 거래가격이 기준가격을 밑돈 달에 계약회원이 가입생산자의 위탁을 받아 판매한 적격란의 수량에 거래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채액의 90% 액을 제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계약회원이 가입생산자의 위탁을 받아 판매한 수량이 도도부현별(都道府県別) 및 월별의 계약대상수량을 초과했을 때에는 당해 계약회원의 당해 도도부현으로부터 출하된 계란에 대한 당해월의 가격차보전 대상수량은 당해 계약대상수량으로 한다.

2. 기금은 전항의 적격란의 수량이 연차계약에서 약정한 도도부현별 및 월별의 계약대상수량의 105%를 초과했을 때 또는 95%를 밑돌 때에는 당해 계약회원에 대해서는 당해도도부현으로부터 출하된 계란에 따른 당해 월초(月超)한 또는 당해 밑도는 달의 가격차 보전금은 교부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

### (가격차 보전금 교부액의 한도)

기금은 사업년도내에 교부하는 가격차 보전금의 총액을 특별히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의 승인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년도마다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된 보전준비재산금액과 당해 사업년도에 적립해야 할 보전준비재산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 (가입생산자에 대한 가격차 보전금의 교부)

기금은 계약회원에 교부한 가격차 보전금을 당해 계약회원으로 하여금 당해계약회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본계약 및 연차계약을 체결한 가입생산자에 대하여 당해 가입생산자가 출하한 적격란 가운데 거래가격이 기준가격을 밀돈달(下回月)에 당해 계약회원이 판매한 수량에 따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단, 가입생산자에 관한 당해월의 적격란 판매수량이 그 사람의 그달의 계약대상수량을 초과했을 때의 가격차 보전대상수량은 당해계약대상수량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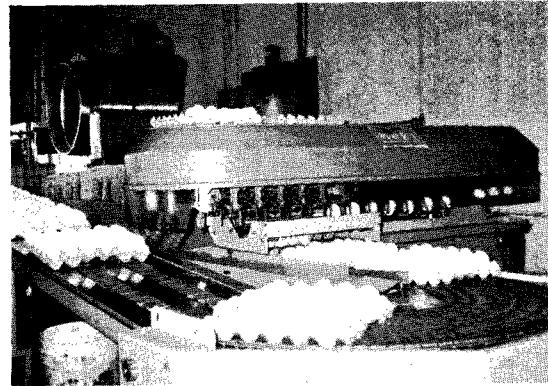
#### (교부의 수속)

1. 기금은 거래가격이 기준가격을 밀돌았을 때에는 계약회원으로서 당해월분을 집계하여 따로 정한 서류를 첨부한 계란가격차 보전금 교부청구서를 기금에 제출한다.
2. 기금은 전항의 청구서가 제출되면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가격차 보점금을 교부한다.

#### (가격차보전금의 반환 등)

기금은 계약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했을 때에는 당해 계약회원에 대해서 가격차 보전금의 전부 또는 1부를 교부아니하고 또는 이미 교부한 가격차 보전금의 전부 또는 1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 ① 기금에 제출된 청구서에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때
- ② 보전 적립금의 납입 기타 기금에 대한 업무이행을 태만했을 때
- ③ 계란 계획생산 추진에 관한 정부의 통달을 준



수하지 않은 가입생산자가 있을 때

#### (계란조정보관에 의한 손실 보전 및 이익수납)

1. 기금은 계약회원이 축산물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계란보관 계획에 근거하여 계란조정 보관을 할 때에는 미리 당해회원의 신청에 따라 당해 보관계획별로 계란조정보관에 의한 손실보전 및 수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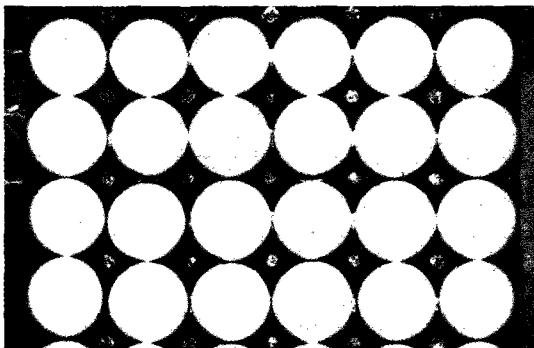
2. 기금은 전항의 회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신청에 따라 다음 서류를 기금에 제출토록 한다.

- ① 농림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계란보관 계획
- ② 전호의 계란보관 계획에 따른 농림수산부장관의 인정서 사본
- ③ 기타 기금이 필요로 하는 서류

#### (손실의 보전 및 이익의 수납)

1. 기금은 계란 보관계획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계란보관 계획에 따라 보관한 계란을 판매했을 때 당해 보관에 의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손실보전금을 당해 회원에게 교부하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당해 회원으로 하여금 이익금을 기금에 납부토록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손실보전금 및 납부시키는 이익금액은 각각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① 손실보전금의 산식

$$\frac{(P^1+C)-(P^2+S)}{2}$$

② 이익금의 산식

$$\frac{P^2-(P^1+C)}{2}$$

(주)  $P^1$  : 당해보관계란의 마감총액

$P^2$  : 당해보관계란의 판매대금총액

C : 당해보관에 소요된 총비용

S : 축산물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축산진흥 사업단의 조성금액

(손실보전금의 교부수속)

1. 기금은 계란보관계획 실시완료 보고가 있을 때는 당해 회원으로 하여금 따로 정한 서류를 첨부한 손실보전금 교부청구서를 기금에 제출토록 한다.

2. 기금은 전항의 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이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부액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청구자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익금의 수납수속)

1. 기금은 전항의 보고를 받으면 그 보고서 및 첨부서를 지체없이 심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받아

들일 이익금을 결정하고 그 취지를 당해 보고한 회원에게 통지한다.

2. 기금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할 이익금을 결정했을 때에는 당해 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할 회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통지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기금에 납부토록 한다.

(판매실적의 보고)

기금은 계약회원으로 하여금 계약대상적격란의 월별 총판매실적 수량을 매월 그 익월 15일까지 기금에 보고한다.

(계란보관 계획에 따른 보고)

기금은 계란보관계획을 계약한 회원이 당해 계약에 따른 계란보관 계획실행을 완료했을 때에는 당해 회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케 한다.

① 보관의 실시기간 및 수량과 당해보관계획의 판매수량

② 앞의 산식중  $P^1$ ,  $P^2$  및 S

③ 기타 참고사항

(보고의 접수 및 조사 등)

기금은 이 업무방법서에 의한 계란가격차보전 등의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회원, 가입농협 및 단위농협 또는 가입생산자로 하여금 필요사항을 보고토록하며 또는 이들의 장부와 기타 서류를 열람하고 그 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

(계란의 기준가격 승인 등)

1. 기금은 다음 각호 사항을 정하고 또는 개정코자할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의 승인을 받

66

**가격차 보전금은 국고보조와  
계란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적립금으로  
조성한 교부준비금에서 지출도록 되어  
있으며 보전기준 가격을 밀들 때  
그 차액의 90%를 교부토록 되어 있다.**

99

아야 한다.

- ① 기준가격
- ② 단위수량당의 보전적립금액
- ③ 손실보전금 및 수입이익금액
- ④ 기본계약 및 연차계약에 의한 계약대상 수량

2. 기금은 매사업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지체없이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기금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적당하  
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대하여 이 업무방법서에 의한  
기금업무의 1부를 위탁할 수 있다.

(세칙)

기금은 이 업무방법서가 정한외에 그 업무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칙을 정할 수 있  
다.

(부칙)

이 업무방법서의 변경은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사단법인 전일본난가안정기금의 정관

과 업무방법서를 중심으로 핵심을 설명하였다. 일본  
에서는 이를 시행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일본회계검사원(우리나라 감사원격)이 86년도  
결산검사보고를 총리에게 제출한 내용 중 양계관계에  
서 거론 지적한 계란가격 안정대책사업에 관한 내용  
을 보면 이 사업의 가격차 보전금은 사업의 목적한  
바 취지대로 교부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적정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검사결과는 ① 계획생산을  
준수토록 되어 있음에도 암컷 사양수수가 초과되어  
있다. ② 생산예정수량 전량을 기금과 계약하여야  
함에도 안하고 있다. ③ 판매는 가입농협 등을 통하여  
위탁하여야 함에도 전량 또는 일부를 농협 등 이  
외에 판매하고 있다. ④ 교부금은 판매수량이 계약  
대상 수량보다 적은 데도 계약수량으로 판매한 것으  
로 되어 있다. ⑤ 판매실적수량이 계약대상 수량의  
105%초과 또는 95% 이하일 때에는 교부할수 없는데  
도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등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양계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단  
법인 전국계란가격 안정기금과 전일본 난가안정기금  
이 시행하고 있으며 국고보조도 85, 86년도에 각각  
약13억엔씩을 지원받고 있다.

가격차 보전금은 국고보조와 계란생산자 및 생산  
자단체의 적립금으로 조성한 교부준비금에서 지출토  
록 되어 있으며 보전기준 가격을 밀들 때 그 차액의  
90%를 교부토록 되어 있다.

회계 검사원에서는 교부실태 조사에서 북해도 등  
18개도부현(道府県)의 생산자 약 5천명 교부금 약 55  
억엔 국고보조 약 10억엔을 지출한 실적중 실로 검사  
대상의 약 90%가 위반사례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기금제도와 더불어 계란의 계획생산을 목적으로 한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데도 그 목적에 위반된 사  
업이 실시되고 있어 계획생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림수산부에 대하여 재검토와 규정의  
정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의 참고가 되  
었으면 한다.

영재